

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식경제부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(2011. 1. 19. 제24차 회의)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,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10350호, 2010. 6. 8. 공포, 9. 9. 시행)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, 도로의 폭, 용기보관실·사무실·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.

지식경제부령 제 호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1호가목(1)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) 시·도지사가 1)가 및 사)에 대하여 시·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)가 및 사)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.

별표 6 제1호가목(7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7) 그 밖의 기준

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1)가)·2)다)·5)가)·5)나)에 대하여 시·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)가)·2)다)·5)가)·5)나)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

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.

별표 6 제2호가목3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)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호가목1)가)·2)다)·5)가에 대하여 시·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1호가목1)가)·2)다)·5)가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분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.

별표 10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,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5년 이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,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,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,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

별표 10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행정처분권자는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는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.

- 1)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: 그 처분일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
- 2) 허가취소의 경우: 6개월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설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1호가목10)나) 본문, 별표 6 제1호가목7) 본문 및 별표 6 제2호가목3) 본문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10)나), 별표 6 제1호가목7) 및 별표 6 제2호가목3)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